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<u>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</u>”(이하 “<u>정보통신망</u>”이라 한다)이란 관세청장 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) 또는 관세청 FTA포털(http://www.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지정 정보통신망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FTA관세법 시행령 제 48조제3항의 용어와 일치
<p>제6조(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) ① <u>통관지세관장</u>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) ① <u>세관장</u>은 ----- -----.</p> <p>② (생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어 정비
<p>제7조(잔여수량의 게시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7조(잔여수량의 게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

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 까지 게시하여야 한다.

제3절 수입신고 수리 전
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

제10조(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) ①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-----
지정 정보통신망에 -----
-----.

제3절 수입신고수리 전
협정관세의 신청 및 적용

제10조(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(이하 “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”이라 한다)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.

1. 원산지증명서(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

- FTA관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용어와 일치
-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용어와 일치
-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용어와 일치
-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심사 대상 (사전 협정관세 심사)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규정 마련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「관세법」 제 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 망에 전자신고등(이하 “전자신고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7조(관세채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) 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

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템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)

2.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

3. 국제운송 관련 서류

4. 원가계산서·원재료내역서·공정명세서(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)

5.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·생산 관련 증빙서류(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) ①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

-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세부 심사절차 마련

심사하는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
리에 관한 고시」 제24조제3항 및 제4
항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
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사한다.

1. 제11조 각 호의 사항

2.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
정기준 충족 여부

3.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
증명서의 적정 여부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
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

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
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
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
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
다.

③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
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
의 절차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
고시」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
다.

- 현행 제17조, 제57조의
내용을 이 조문에 통합

<신 설>

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⑤ 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.

<신 설>

⑥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.

<신 설>

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심사한다.

-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방법 규정

<신 설>

제17조의2(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·해제) 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.

-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지정·해제 절차 규정

<신 설>

1. 적용 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「관세법」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

<신 설>

2.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

3.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

<신 설>

4.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 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 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

<신 설>

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1. 적용대상 협정·원산지·품목번호·품명(단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)

<신 설>

2.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기간

<신 설>

③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28조(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)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

제28조(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) ① -

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.

1. ~ 6. (생략)
7.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(이스라엘과의 협정): 제7란(Observations)에 날인

<신 설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.

1. (생략)
2. 인도와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근무일 수 7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3. ~ 4. (생략)
5. 인도네시아와의 협정: 선적일 후 7일 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----- 제24호의7서식-----

--

8.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(캄보디아와의 협정): 13번란(Certification)에 날인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7근무일 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-----

3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선적일로부터 -----

• FTA관세법 시행규칙상 서식과 일치

• 캄보디아와의 협정 반영

• 협정별 기재방식 일원화

• 협정별 기재방식 일원화

경우

6. 이스라엘과의 협정: 선적일 후 7근무 일 이내 발급하는 경우

<신 설>

제34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 ①·②(생략)

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④ (생략)

제35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·②

6. -----
- 이내(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)에

7. 캄보디아와의 협정: 선적일로부터 7 일(선적일을 포함한다)이내에 발급하는 경우

제34조(원산지증명서 재발급) ①·②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(캄보디아와의 협정): 13번 란(Certification)에 날인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) ①·②

• 협정별 기재방식 일원화

• 캄보디아와의 협정 반영

• 캄보디아와의 협정 반영

(생략)

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.

1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, 아세안회원국, 인도,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: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,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

2. (생략)

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1. -----
----- 베트남,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의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캄보디아와의 협정

• 캄보디아와의 협정 반영

• 캄보디아와의 협정 반영

제37조(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)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7조(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·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) ① 수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(이하 “적용제한자”라 한다)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이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

제37조(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) ① -----
----- 지정 정보통신망에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• FTA관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용어와 일치

• 제17조와 통합

정기준 등 특혜적용의 요건 충족 여부

2.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 여부

<삭 제>

3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요건 충족 여부

<삭 제>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

<삭 제>

③ 통관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예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④ 통관지세관장은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9조제

<삭 제>

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⑤ 통관지세관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(통보)하여야 한다.

제61조(통지방법)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(E-Mail) 또는 FAX로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61조(통지방법) -----

----- 팩스
로 -----.

부칙

<관세청고시 제2022-00호(2022.00.00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7호, 제34조제3항제8호, 제35조제3항제1호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, 제35제4항제5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캄

-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(법제처 권고) 반영

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, 제10조제2항 단서, 제17조제7항,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는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3]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</p> <p>[별표 3]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97 422 835 762"> <thead> <tr> <th>협정의 종류</th> <th>선적 후 발급 스탬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도와의 협정</td> <td rowspan="2">"ISSUED RETROSPE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</td> </tr> <tr> <td>이스라엘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싱가포르와의 협정</td> <td rowspan="5">"ISSUED RETROA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</td> </tr> <tr> <td>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베트남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중국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인도네시아와의 협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협정의 종류	선적 후 발급 스탬프	인도와의 협정	"ISSUED RETROSPE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이스라엘과의 협정	싱가포르와의 협정	"ISSUED RETROA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	베트남과의 협정	중국과의 협정	인도네시아와의 협정	<p>[별표 3]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</p> <p>[별표 3]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6 438 1547 805"> <thead> <tr> <th>협정의 종류</th> <th>선적 후 발급 스탬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도와의 협정</td> <td rowspan="2">"ISSUED RETROSPE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</td> </tr> <tr> <td>이스라엘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싱가포르와의 협정</td> <td rowspan="5">"ISSUED RETROA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</td> </tr> <tr> <td>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베트남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중국과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인도네시아와의 협정</td> </tr> <tr> <td>캄보디아와의 협정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협정의 종류	선적 후 발급 스탬프	인도와의 협정	"ISSUED RETROSPE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이스라엘과의 협정	싱가포르와의 협정	"ISSUED RETROA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	베트남과의 협정	중국과의 협정	인도네시아와의 협정	캄보디아와의 협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적 후 발급 스탬프 날인 방법에 캄보디아 와의 협정을 추가
협정의 종류	선적 후 발급 스탬프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도와의 협정	"ISSUED RETROSPE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스라엘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싱가포르와의 협정	"ISSUED RETROA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																								
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베트남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국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도네시아와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협정의 종류	선적 후 발급 스탬프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도와의 협정	"ISSUED RETROSPE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스라엘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싱가포르와의 협정	"ISSUED RETROACTIVELY" (세로 0.8cm, 가로 7cm)																									
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베트남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국과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도네시아와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캄보디아와의 협정																										